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13 |
|----------|------|

제출년월일 : 2005. 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산시안전 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임

□ 주요골자

- 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3조)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함.(안 제15조)
- 다.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함.(안 제18조)
- 라. 실무반 편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21조)
- 마.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함.(안 제22조 내지 제31조)
- 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8조)
- 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41조 내지 제4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3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32조, 제50조, 제75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제24조, 제4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1. 20. ~ 2005. 2. 1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준칙(안)
⇒ 경기도 건설계획과-12897호(2004.06.19)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달
⇒ 경기도 건설계획과-13758(2004.07.02)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
⇒ 경기도 건설계획과-18689호(2004.09.01)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 수정·보완
⇒ 경기도 건설계획과-23991(2004.11.04)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준(안)
⇒ 경기도 건설계획과-20639(2004.09.22)
- 현행 안산시재해대책본부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시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3. 안산소방서장
 4. 안산경찰서장
 5. 육군 제2506부대 제4대대장
 6.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7. 안산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시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5. 안산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시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사항을 조정·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로 실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 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단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기타 :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 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중 경보의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 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 이라 함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 이라 함은 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 라 함은 기반체계의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 이라 함은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 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반체계의 2차적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고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 라 함은 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 이라 함은 기반체계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시 본청 과장급에 상당하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책임기관중 시 관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 제15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이 장에서 “대책본부”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외에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 ②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업무 담당국장 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 ④통제관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두되, 자연·인적재난에 대한 통제관은 시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기반재난에 대한 통제관은 시의 기반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각각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 ⑤담당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의 담당과장이 되며, 각각 소관 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 상황실장” 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재난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 (이하 “기반재난상황실장” 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련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16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임전결)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자연·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구분하여 따로 정하며,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절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18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9조 (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재난종합상황실장 및 기반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업무에 관련되는자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 ①자연·인적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재난단계별로 별표 5 내지 별표 7과 같이 구분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 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일정 위치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 및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절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2조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 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긴급구조통제단장(안산소방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긴급 구조에 관하여는 안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 지휘한다.

⑤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 (현장상황지원관 등의 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 5급 공무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현장 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 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 및 경기도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국가기반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과 대책본부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25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본부장은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26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 ②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비상연락망 구축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소집시 상황근무 대상자가 이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소속 직원의 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과 연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 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 ⑤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 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현장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고시기

-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 간별로 수시보고
-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절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 제32조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기반재난상황실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상황을 경기도 기반 보호상황실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의 전파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보고내용

-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지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통보)방법

-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 가. 기반재난 상황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 본청 과장급에 상당하는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시(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경기도 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체계보호관련 시 안전관리계획의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 관리업무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총괄

제35조 (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예방단계에서는 기반재난상황실 및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시 기반재난상황실, 경기도기반보호상황실, 관계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6조 (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대비단계에서는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관계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기반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 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시 기반재난상황실(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경우), 경기도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대응단계에서는 본부장은 상황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에서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기반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절 보 칙

제39조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

- 제41조 (구성)** ①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③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3조 (임기) ①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4조 (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 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관련된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회의록 등) ① 서기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8조 (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소관 실·과 | | 전 설 과 |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전 설 과 장 김준연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방재담당 김봉구 |
| | 담당자 성명·전화 | 최동열 (행정 2162) |

[별표 1]

자연·인적재난관련 전결 사항(제17조 관련)

| | 업무 내용 | 본부장 결재 | 전결권자 | | |
|--|---------------------------------|-----------|------|-----------|-----|
| | | | 차장 | 총괄 조정관 | 통제관 |
| 본부 조직 및 운영 |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 | | ○ |
|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 | | ○ |
|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 | | ○ |
|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 | | ○ |
|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 | | | ○ |
| | 재해일지 기록배치 | | | | ○ |
|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 | | ○ |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 | | | ○ |
| 대책본부 지휘 감독 | | | | | ○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 | | | ○ |
| 상황단계별 조치 | 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 각종 조치사항 | | | | ○ |
| | 준비단계(사전대비체제) 각종 조치사항 | | | | ○ |
| | 비상단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 홍수 등 경보 발령시 | | | | ○ |
| | 홍수주의보 발령시 | | | | ○ |
| | 기상주의보 발령시 | | | | ○ |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 | | | ○ |
| 수난구조사 항 |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수난구조 상황파악 | | | | ○ |
| 군지원사 항 | 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 | | ○ |
| 구호활동사 항 |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 | | ○ |
| 통신망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 | ○ | |
|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 | | ○ |
| 피해종합 대책 | 기상자료 수집 | | | | ○ |
| | 피해상황 자료수집 | | | | ○ |
|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 | | ○ |
| | 현장상황지원관 현지파견 | | | ○ | |
| | 현장상황지원팀 구성 및 현지 파견 | | | ○ | |
|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 ○ | | |
|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 | | | |
|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 | | ○ |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 | | | ○ |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 | | ○ |

[별표 2]

기반재난관련 전결 사항(제17조 관련)

| 업무 내용 | 본부장 결재 | 전 결 권 자 | | | |
|-------------------------------|---------------------|---------|-----------|-----|-----|
| | | 차장 | 총괄 조정관 | 통제관 | 담당관 |
|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 ○ | | |
|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 | ○ | |
|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 | ○ | |
|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 | ○ | |
|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 | | ○ |
|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 | | ○ |
|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 | | ○ |
|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 | ○ | |
|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 | | ○ |
| 대책본부 회의운영 |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 ○ | | |
| | 회의소집 방침결정 | ○ | | | |
|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 | | ○ |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 | | ○ | |
| 대책본부 지휘·감독 | | ○ | | |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 | | ○ | |
| 상황단계별 조 직 |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 ○ | | |
|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 ○ | | |
| 상황 관리 | 재난상황 수집전파 | | | | ○ |
|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 | | ○ |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 ○ | | | |

| 업무 내용 | | 본부장 결재 | 전결권자 | | | |
|-------------------|------------------------|-----------|------|-----------|-----|-----|
| | | | 차장 | 총괄 조정관 | 통제관 | 담당관 |
| 군지원 사 |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 | | ○ | |
|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 | | | ○ |
| 공권력 투입 지원 사 |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 | | | | |
|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 | | | ○ |
| 수송·통신 에관한 사항 |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 | | ○ | |
|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 | | | ○ |
| 통합지원 종합대책 | 지원상황 자료수집 | | | | | ○ |
|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 | | | ○ |
| | 현장상황지원관 현지 파견 | | | ○ | | |
| | 현장상황지원팀 구성 및 현지 파견 | | | ○ | | |
| | 현장상황지원관 활동상황 파악 | | | | | ○ |
|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 | | | ○ |
|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 | ○ | | |
|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 | | | ○ |

[별표 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 구 분 | 담 당 업 무 | | | | |
|----------|---|----------|---|----------|---|
| 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자연·인적재난 상황업무 총괄 | | | | |
| 재난종합상황실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 | | | |
| 상황 관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재난정보 관리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input type="radio"/>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input type="radio"/> 재난정보 수집·분석 <input type="radio"/>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input type="radio"/>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상황분석 판단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input type="radio"/>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input type="radio"/>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input type="radio"/>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td></tr> </table> | 재난정보 관리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input type="radio"/>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input type="radio"/> 재난정보 수집·분석 <input type="radio"/>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input type="radio"/>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 상황분석 판단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input type="radio"/>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input type="radio"/>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input type="radio"/>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
| 재난정보 관리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input type="radio"/>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input type="radio"/> 재난정보 수집·분석 <input type="radio"/>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input type="radio"/>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 | | | |
| 상황분석 판단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input type="radio"/>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input type="radio"/>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input type="radio"/>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 | | | |
| 유관부서 지원팀 | <p>〈건설 및 건축 관련 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불교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input type="radio"/>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p>〈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input type="radio"/>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하천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input type="radio"/>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p>〈사회복지 및 여성 관련 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input type="radio"/>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p>〈경제 및 통상 관련 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p>〈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사전 피해예방조치 | | | | |

| | |
|-----------------|---|
| 유관기관 지원팀 | <p>〈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화생방사고 예상파악 및 분석 등 ○ 교통사고 예상파악 및 분석 등 〈수자원공사건설단, 농업기반공사사업단〉 ○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 상수도 취·정수시설물 및 관로 피해예상 대비계획 수립 〈한국전력공사, KT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 ○ 전력설비 피해 및 공급 지장 예상파악 및 분석 ○ 발전설비 피해 예상 파악 및 대비 ○ 통신두절 대비 통신망 확보계획 수립 ○ 전기설비 안전대책 수립 등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 가스시설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 열공급 시설 중장기 보수계획 수립 〈한국도로공사 지사〉 ○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
|-----------------|---|

2. 근무방법

-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유관부서 지원팀 : 해당부서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팀 편성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인적재난 관련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임무

| 구 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총괄조정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차장 보좌, 비상단계에서 자연인적재난 상황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통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사전대비체제)에서 자연·인적 재난 상황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 | | | | | | | | | | | | |
| 재난종합상황실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td></tr>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15%;">상황 관리 지원 반</td><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반장</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td></tr> <tr> <td style="width: 15%;">관리 지원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td></tr> <tr> <td style="width: 15%;">상황 분석 판단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td></tr> </table>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행정 지원반</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구조 구급반</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구급 업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재난종합상황실 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td></tr> </table> |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 관리 지원 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반장</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td></tr> <tr> <td style="width: 15%;">관리 지원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td></tr> <tr> <td style="width: 15%;">상황 분석 판단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td></tr> </table> | 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 관리 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상황 분석 판단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 행정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구조 구급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구급 업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재난종합상황실 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
|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 | | | | | | | | | | | | |
| 상황 관리 지원 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반장</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td></tr> <tr> <td style="width: 15%;">관리 지원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td></tr> <tr> <td style="width: 15%;">상황 분석 판단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td></tr> </table> | 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 | 관리 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상황 분석 판단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 | | | | | | |
| | 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관리 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 | | | | | | | | | | | |
| 상황 분석 판단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 | | | | | | | | | | | | | |
| 행정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 | | | | | | | | | | | | |
| 구조 구급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구급 업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재난종합상황실 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 | | | | | | | | | | | | | |

| | |
|-----------|--|
| 비상 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 지원 협조요청 ○ 주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주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KBS 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 | |
| | |
| | |
| | |
| | |

2. 근무방법

-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 장소는 시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괄조정관(비상단계시) 및 통제관(사전대비체제시)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인적재난 관련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구 분 | 담당업무 |
|----------|--|
| 담당관 | <input type="radio"/> 기반재난 업무 총괄 |
| 기반재난상황실장 | <input type="radio"/> 담당관 보좌,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상황관리팀 | <input type="radio"/>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input type="radio"/>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input type="radio"/>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input type="radio"/>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input type="radio"/>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
| 상황분석팀 | <input type="radio"/>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input type="radio"/>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input type="radio"/>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input type="radio"/>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input type="radio"/>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팀 편성 및 팀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재난 관련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구 분 | 담당업무 |
|----------------|---|
| 통 제 관 | <input type="radio"/>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 |
| 담당관 | <input type="radio"/> 통제관 보좌 |
| 기반재난상황실장 | <input type="radio"/> 통제관·담당관 보좌,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상황총괄반 | <input type="radio"/>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input type="radio"/>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input type="radio"/> 관계기관·기반재난상황실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input type="radio"/>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작성, 관계기관 전파 <input type="radio"/>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
| | <input type="radio"/>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input type="radio"/>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input type="radio"/>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input type="radio"/>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
| | <input type="radio"/>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input type="radio"/>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
| 치안구조 및 구조구급대책반 | <input type="radio"/>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input type="radio"/>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input type="radio"/>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input type="radio"/>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은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 및 상황대책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및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재난관련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구 분 | 담당업무 | |
|-------------------------------------|--|--|
| 총괄조정관 | <input type="radio"/> 본부장 및 차장보좌, 기반재난상황 업무 총괄 | |
| 통제관 | <input type="radio"/>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 |
| 담당관 | <input type="radio"/>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
| 기반재난상황실장 | <input type="radio"/>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보좌 <input type="radio"/>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 상황총괄반 | 상황관리팀 | <input type="radio"/> 반장 : 상황 총괄 |
| | | <input type="radio"/>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 | | <input type="radio"/> 긴급 상황보고서 및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 | | <input type="radio"/> 경찰·소방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 | | <input type="radio"/>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작성, 관계기관 전파 |
| | | <input type="radio"/>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
| | | <input type="radio"/> 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관리·투입협조·지원 등) |
| | 상황분석팀 | <input type="radio"/>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 | | <input type="radio"/>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 | | <input type="radio"/>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 상황대책팀 | <input type="radio"/> 재난 예·경보 발령 및 방송 요청 | |
| | <input type="radio"/>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 | <input type="radio"/>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
| | <input type="radio"/>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
|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input type="radio"/>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 |
| | <input type="radio"/>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등 | |
| | <input type="radio"/> 반장 :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 총괄 | |
| | <input type="radio"/>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
| | <input type="radio"/>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
| 행정지원반 | <input type="radio"/>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
| | <input type="radio"/>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
| | <input type="radio"/> 반장 : 행정지원 총괄 | |
| | <input type="radio"/>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관리 | |
| 공보지원반 | <input type="radio"/> 경찰력 배치 점검 | |
| | <input type="radio"/> 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
| | <input type="radio"/>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
| | <input type="radio"/>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
| <input type="radio"/> TV, 라디오 인터뷰 등 | | |

2. 근무방법

- 24시간씩 3교대의 비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장소는 시 기반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재난관련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연·인적재난 상황보고서 (제31조관련)

즉보 제 호

| | | |
|--|--------|---|
| 수 신 : | 접수일시 : | |
| 시행일시 : | 발 신 : | 인 |
| 제 목 : | | |
| 1. 일 시 : | | |
| 2. 장 소 : 시 구 동 번지 | | |
| 3. 상황개요(사고원인) | | |
| 4. 피해상황 | | |
| <input type="radio"/>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 |
| <input type="radio"/> 재산피해 | | |
| <input type="radio"/> 그 밖의 피해 | | |
| 5. 응급조치사항 | | |
| <input type="radio"/> 조치사항 | | |
| <input type="radio"/> 동원사항 | | |
|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
| · 장 비 : 대() | | |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
| 7. 향후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2호 서식]

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서 (제33조 관련)

즉보 제 호

| | | |
|--------|--------|---|
| 수 신 : | 접수일시 : | |
| 시행일시 : | 발 신 : | 인 |
| 제 목 : |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조치사항(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시)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 서식]

기반재난 피해상황보고(통보)서 (제33조 관련)

| | |
|--|---------|
| 수 신 : | 접수일시 : |
| 시행일시 : | 발 신 : 인 |
| 제 목 : | |
| 1. 일 시 : | |
| 2. 장 소 : 시 구 동 번지 | |
| 3. 피해개요 | |
| 4. 피해상황 | |
| <input type="radio"/>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
| <input type="radio"/> 재산피해 : | |
| <input type="radio"/> 그 밖의 피해 : | |
| 5. 응급조치사항 | |
| <input type="radio"/> 조치사항 | |
| <input type="radio"/> 동원사항 | |
|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 비 : 대() | |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 <input type="radio"/> | |
| <input type="radio"/> | |
| 7. 향후전망 및 대책 | |
| <input type="radio"/> | |
| <input type="radio"/> | |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 안 번 호 | 1313 |
|------------|------|

제안년월일 : 2005. 3. 1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만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회의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를 “경미하다고”로 수정함.
(안 제6조제5항)
- “다만, 서면회의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0조)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5항중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를 “경미하다고”로 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회의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비표

| 원안 | 수정(안) |
|---|---|
| <p>제6조(위원회의 회의)</p> <p>① ~ ④ (생략)</p> <p>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u>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u>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6조(위원회의 회의)</p> <p>① ~ ④ (원안과 같음)</p> <p>⑤ <u>경미하다고</u></p> |
| <p>제10조(수당 등)</p> <p>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신설></u></p> | <p>제10조(수당 등)</p> <p>.....</p> <p><u>다만, 서면회의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